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7
----------	------

제출일자 : 2026. 5. 2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 납부 방식의 다양화(안 제22조제3항)
- 나.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제3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6. 1. 30. ~ 2. 19.)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 등이 신청사항 등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수수료)</p> <p>① ~ ② (생략)</p> <p>③ <u>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2조(수수료)</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u>과오납한 경우</u></p> <p style="margin-left: 20px;">2. <u>신청인 등이 신청사항 등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3. <u>그 밖에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u></p>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납부받은 수수료가 과오납되는 등 잘못납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